

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

1993. 10. 22.
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 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3년 10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1993년 10월 11일

다. 상정일자

제 95회 임시회

○ 제 1 차 기획경제위원회 ('93년 10월 18일) 상정

○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국장 유병현)

가. 제안이유

물가안정대책 총괄 조정기능강화 및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도모

나. 주요골자

○ 기 능

- .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
- .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,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
(상.하수도료, 교통요금, 지방공사의료원등의 의료수가 등)

○ 위원회 구성

- . 대책위원회 : 15인이상 25인이하 (위원장 : 도지사)
 - 임 기 : 2 년 (연임가능)
 - 구 성 : 충청북도의 물가관련국장, 청주지방경찰청
경제담당검사,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과
물가관련 기관.단체의장, 교수, 언론인,
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
- . 실무위원회 : 10인이내 (위원장 : 부지사)
 - 구 성 : 유관기관.단체의 실무급 인상과 관계전문가
소속공무원중 위원장이 위촉

○ 회 의 : 정기 (분기1회) 및 수시개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안창국)

충청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
소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,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항
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상.하수도공공요금, 교통요금, 의료원 수가등
에 대하여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물가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고
있으나,

법적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미비한 바

지역단위 물가대책에 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코져 본 조례를
제정하려는 것으로서, 그 주요기능을 살펴보면,

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물가관련 기관.단체간
협조사항을 조정 통제하는 한편,

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을
계획 조정하려는 것입니다.

충청북도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앞으로
지방단위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도모하여 물가안정 기반구축에
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,

본 조례 제정안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문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5. 토론요지 : 해당사항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대로 가결 (참석 8, 찬성 8)
7. 소수의견요지 : 해당사항 없음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: 충청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